

레오10호 소액투자전문펀드
사업계획서

2018. 03. 15.

레오10호 소액투자전문펀드
업무집행조합원 (주)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I. 개요

1. 명칭 : 레오10호 소액투자전문펀드(SMCI Fund 10)
2. 목적 : 원천IP, 문화콘텐츠 초기기업 등 문화산업 전반에 소액투자
(원천 IP란, 소설·웹툰 등 타분야로의 활용이 가능한 1차 창작콘텐츠)
서울 소재 콘텐츠(애니메이션, 만화 웹툰, 게임, 캐릭터, MCN) 관련 중소벤처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
3. 조합의 규모 : 금일백오십일억원정(W15,100,000,000-)
4. 존속기간 :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7년
5. 조합원의 구성

(단위: 백만원,%)

구 분	조합원	출자금액	비율	출자방법
업무집행조합원	(주)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400	2.65	분할납
특별조합원	한국모태펀드	10,000	66.23	분할납
유한책임조합원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1,500	9.93	분할납
유한책임조합원	(주)로엔엔터테인먼트	1,500	9.93	분할납
유한책임조합원	메가박스(주)	1,200	7.95	분할납
유한책임조합원	(재)서울산업진흥원	500	3.31	분할납
합 계		15,100	100.0	

II. 출자계획

1.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가. 출자금 총액 : 금일백오십일억원정(₩15,100,000,000-)

나. 출자 1좌의 금액 ; 금일천만원정(₩10,000,000-)

2. 출자의 시기 및 방법

가. 출자 방법 : 분할납 방식

나. 출자의 시기

구분	납입(예정)일	출자금 총액
설립출자금	2018년 3월 15일	6,040,000,000원
추가출자금	조합이 성립한 날로부터 4년 내	9,060,000,000원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의 설립출자금 출자의무 이행을 위하여 결성총회 이전에 각 조합원에게 납입 일시·장소 및 금액을 명기한 서면으로써, 납입일 이전까지 각 조합원에게 출자이행의 통지를 하며, 조합원은 그 통지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
- 추가출자금은 기존 납입된 출자금의 70% 이상이 소진되고, 조합이 성립한 날로부터 4년의 범위 내에서 2회동안 균등한 금액으로 분할 납입, 업무집행조합원은 추가출자금에 대한 출자의무 이행을 위하여 추가출자금 납입요청일의 10영업일 이전까지 각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출자 이행 통지를 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은 그 통지에 따라 추가출자금을 납입
- 출자는 내국통화로 하되,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3.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 업무집행조합원 : (주)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 특별조합원 : 한국모태펀드(업무집행조합원 : 한국벤처투자(주))
- 유한책임조합원 :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주)로엔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주), (재)서울산업진흥원

Ⅲ. 조합의 자산운용계획

1. 주요투자대상

원천IP(소설·웹툰 등 타분야로의 활용이 가능한 1차 창작 콘텐츠), 문화콘텐츠 초기기업 등 문화산업 전반에 대하여

- 소액투자(건당 투자액은 5억원 이내, 업체 당 총 투자액은 20억원 이내)
 - → 출자약정액의 70% 이상을 투자(규약 제54조 제1항 제1호)
- 서울 소재 콘텐츠(애니메이션, 만화 웹툰, 게임, 캐릭터, MCN) 관련 중소벤처기업 또는 프로젝트
 - → 서울산업진흥원 출자금의 200% 이상을 투자(규약 제54조 제1항 제3호)

2. 투자방법

가. 투자전략 및 방법

- 투자사의 역할 설정

- Team Building

- 당 조합 조합원 및 기존 조합원으로 구성된 Team Building
- Sourcing/Development 단계부터 개별 투자 대상에 부합되는 Team 구성,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 취합
- 이후 Multi-Use 단계에서 사업적 협력을 전제로 프로젝트 전개
- 단순히 원천IP → 드라마화/영화화의 단선적인 접근이 아니라, 영화 오리지널 IP를 활용한 웹툰, 웹소설 제작 등 네트워킹 방식의 전개

- System Builder : Investment Structuring

- 향후 원천 IP 전개 시, 각 분야 사업자와의 합리적인 투자 구조 및 수익 분배 구조의 설정
- 기존 각 산업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역할 및 Risk 분담에 따라 협의
 - 필요 시, 통합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분야별 파트너가 한 개의 '투자 POT'을 통해 비용과 매출을 Share 하는 일본식 제작위원회 구조 도입

• 투자구조 Re-Building Ideation

구분	출판 (웹툰/웹소설)	영화	드라마(방송)	공연
주요 자본조달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 콘텐츠 제작비 낮아 자본조달 Needs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개발비 투자구조 미흡 총제작비의 경우 투자배급사를 통한 100%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국(Platform) 제작지원비,보증보험 등을 통한 대여 방식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티켓판매대행사의 선급금
주요 투자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사 자체 조달 플랫폼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배급사 VC 운용 F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Iss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분배 구조 미확립 타원도우 확장 시 표준화된 징구 체계 미흡(권리관계 정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배급사 의존도 높음 초기 단계 기획개발 투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국의 IP 소유 제작지원비 담보의 대출 초기단계(작가/배우) 비용에 대해 메인 투자 역할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수익률 낮아, 외부 투자 유치 어려움 초기 단계 제작비 모집 불가로 안정적인 제작 환경 미비
본 펀드 적용 방안 (개별 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 IP 투자보다 IP 확장과 연계하여 투자 확장하여 수익 발생 시 투자원금 우선 회수 후 로열티 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투자구조 안정적이므로, 기존 투자 방식 및 사업자 연계 원천IP에 대한 R/S 방식 적용을 통해 수익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라마IP를 제작사가 보유할 수 있도록 원천IP와 연계된 기획개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천IP 제공 + 투자구조 설정 높은 비율의 제작비 조달 지원

○ 중소제작사를 위한 투자

- 연동투자

- 원천IP 투자 후 확장 단계에서의 연동 투자를 전제로 투자 구조 설정
- 원천IP 보유사(중소기업)이 Window 확장 시에도 원천IP에 대한 수익배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장된 콘텐츠 투자시에 원천IP 보유사의 수익 분배 제공
- 원천IP의 확장 단계에서 초기 단계 투자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하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마중물 투자 전개(기존의 기획개발펀드와 연계하여 투자 검토)

- 네트워킹 구축

- 원천IP와 원천IP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에 대한 연동 투자시 원천IP 보유사와 라이선스 간의 네트워크 제공을 통해 장기적으로 역방향 IP확장 가능성 모색(ex. 웹툰IP → 영화화 → 웹소설 등)
-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해외 라이선싱 업체들과의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초기 자본 제공

○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

- New Media Platform

- 원천IP 확대의 범위를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Legacy Media)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Platform과 Service로 확대
- 특히 최근의 원천IP는 웹 기반의 Platform에서 생산, 유통,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로의 확산에 용이
- 해당 시장에서의 새로운 Business Model 구축을 통해 경직되고 불합리한 전통 매체의 사업 구조 개선도 기대

- 관련기업 지분 투자

- 원천 콘텐츠의 확장 단계(Nods)에서 새로운 기술 또는 서비스 기반의 경쟁력 있는 초기기업 투자 진행 : 맥락이 있는 투자 지향
- 다수의 콘텐츠 PF 투자 및 다양한 문화콘텐츠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소싱/발굴

나. 투자 회수 의사결정 구조

○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

- 심사팀의 심사 독립성 확보 가능한 투자 및 회수 의사결정 구조
-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투자/회수 의사결정 구조의 핵심
- 투자심의위원회에서의 형식적인 다수결 의사결정 이전에 LP협의회를 통한 조합원들의 Needs를 조율하고 조합원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

다. 심사 및 투자 절차

단계	중요 업무 내용	의사 결정체
예비심사	1차 예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굴한 업체 중 검토대상 업체 선정 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 자료 수집 	업무집행조합원 : 대표펀드매니저 / 투자팀
2차 평가	사업설명회(IR) / 2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토업체 IR 실시 사업설명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감안 심사 	업무집행조합원 : 대표펀드매니저 / 투자팀
3차 평가 및 Due Dil. / Compliance Check	Compliance Check	Risk Manager / 외부회계·법률자문
	이해상충 및 모럴해저드 방지 Che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정과 조합 간 또는 조합과 조합 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투자자산 배분을 결정 투자재원배분원칙에 따른 재원배분결정 근거, 과정의 명확화 ※ 본계정 투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합출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배제 	Risk Manager / 대표이사
	Preliminary Approval _ 내부투자심의위원회	업무집행조합원 : 투자팀(3) + 이사 또는 주주(1)
	투자대상 Project 관련 Negotiation	대표펀드매니저 / 투자팀
최종 결정	Final Approval _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 GP 의 대표이사 / 상근임원 / 심사역

라. 회수절차 및 이해상충방지

단계	중요 업무 내용
Planning	<p>회수방안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업체의 영업·경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회수방안 수립 및 보고 주요내용 : 회수시기, 회수방법, 회수금액 등
이해상충 Check	<p>공동 투자건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계정과 공동 투자건 매각시 원칙적으로 계정별로 동일한 시점·조건·비율로 매각 조합별 개별상황과 회사의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할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개별 회수전략 결정. 단, 이 경우 사후 이해상충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원칙, 의사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합원에게 사전 서면 고지 필요 시 조합원총회 의결
Approval	<p>회수방안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업체·시장상황·조합의 수익률·조합의 만기 등을 조합하여 고려 가급적 조기 회수함을 원칙으로 함
Collect	<p>회수방안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인 후 지체 없이 집행 회수 결과를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게 보고

3. 투자한도

- 동일기업 및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한도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며,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은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운용 가능
- 업무집행조합원의 고유계정 및 운용중인 타 조합 계정, 법령에서 허용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업체에 대한 본 조합에서의 후행투자 등의 행위는 조합원총회 특별결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다만, 기존에 투자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 특별결의 없이 투자 가능
- 업무집행조합원이 본 조합에서 투자한 업체에 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의 고유계정, 운용중인 타 조합 계정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이 후행 투자 등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조합원총회 특별결의를 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투자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 없이 투자 가능
- 주요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메인투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누계액은 조합해산시 조합 전체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 이내

4.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가. 기본전략

조합재산을 조합 재산 외의 다른 재산과는 구분하여 관리, 운용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 조합의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부전략

- 수탁회사 : 한국산업은행
- 수시입출금 계좌 : 수탁회사의 금융상품으로만 개설, 운용
- 조합원의 수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되, 안정적 투자수요에 지장이 없도록 은행·증권사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만 운용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업체가 발행한 주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출자약정액의 20% 이내에서 운용 가능

5.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

가. 기본가정

- 조합운용기간 중 총 35건의 원천IP와 2차저작물 투자(콘텐츠 관련 초기기업 포함)를 포함하여 150억원 투자 예정
- Project별 평균 투자금액은 원천IP 5억원, 2차저작물 투자 10억원으로 가정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창업3년 미만) 투자도 1차저작물 투자에 포함)
- 투자 건별 목표는 ROI는 평균 각 20%로 가정
- 원천IP는 n+2년 / 2차저작물은 n+1년에 회수되는 것으로 가정

나. 투자 및 회수계획

(단위:건,억원)

Cash Flow	FY1	FY2	FY3	FY4	FY5	FY6	FY7	합계
총 투자	30.0	50.0	50.0	20.0	0.0	0.0	0.0	150.0
원천IP 투자	30.0	30.0	10.0	0.0	0.0	0.0	0.0	70.0
2차저작물 투자	0.0	20.0	40.0	20.0	0.0	0.0	0.0	80.0
회수	0.0	0.0	60.0	84.0	36.0	0.0	0.0	180.0
원천IP 투자	0.0	0.0	36.0	36.0	12.0	0.0	0.0	84.0
2차저작물 투자	0.0	0.0	24.0	48.0	24.0	0.0	0.0	96.0

IV.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1. 분배대상 재산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재산의 원천은 조합재산에서 아래의 비용과 보수 등을 공제한 잔여재산으로 하며,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분

- 규약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경비
- 규약에서 정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성과보수

2. 분배방법

- 조합재산의 투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원금은 투자기간 내에는 재투자를 하거나,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음.
 - 규칙 제9조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된 후 회수된 출자원금
 - 규칙 제9조 이외의 방법으로 투자된 후 회수된 출자원금
 - 조합 등록 후 3년 및 본 규약에서 정한 투자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투자하지 않은 출자원금
- 상기 2호 또는 3호의 출자원금은 특수목적을 포함한 조합의 투자의무를 달성한 경우 배분 가능하며 배분 후 출자원금은 20억원 이상이어야 함.
- 조합청산 시까지 현금화되지 못한 조합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의 전원동의 따라 각 조합원별 배분방식을 결정

3. 조합의 제반비용

가. 운영경비 :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조합이 부담함

- 조합재산에 속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 및 법률자문수수료
- 전사적 자원관리(ERP)의 운영비용
- 조합재산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수탁회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소송비용
- 조합의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
-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
- 기타 조합의 결성 또는 운영에 관련된 직접경비로서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나. 관리보수

- 조합의 성립 시기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출자금총액의 연 2.0%에 해당하는 금액
- 조합의 성립 시기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산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투자잔액(분기말잔액, 투자원금기준)의 연 2.0%에 해당하는 금액
- 투자의무비율 준수 등 조합규약 또는 근거 법령을 위반한 경우 조합원총회 특별결의(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로 당해 회계 연도 관리보수를 100% 이내에서 삭감

다. 성과보수

- 조합은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의 100분의 30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로 지급
- 별도 성과보수 : 별도 성과보수의 합계는 한국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전체 투자금액 대비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보통주 방식으로 신주 투자된 투자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한국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별도 성과보수 지급
 - 전체 투자금액 대비 창업초기기업에 투자된 투자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한국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 지급
- 기준수익률 : 연 3%
- 성과보수는 조합의 최종 결산시 또는 청산시에 지급한다.

4. 목표수익률 : 연 8%

5. 손실금 배분

가. 청산 이전에 조합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분배금

나. 탈퇴조합원에 대한 환급금

다.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환급금

라. 청산시에 조합원에게 배분할 재산

- 상기 (가)~(라)의 금액의 합계액이 조합의 출자금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산 당시 조합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배분

6. 조합해산 및 청산의 절차, 방법

가. 조합의 해산

규약에 따라 연장되는 않는 한 조합 존속기간 만료시 해산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 해산 가능

- 조합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때
- 업무집행조합원이 탈퇴한 때
-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의 말소
-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의 취소, 합병, 파산 기타 다른 사유로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 조합자산이 잠식되거나 기타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청산의 절차 및 방법

- 청산인 : 업무집행조합원
- 청산의 절차
 -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작성 및 재산의 처분계획 수립
→ 각 조합원 앞 송부
 - 잔여재산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 배분. 다만,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유보하고 잔여재산 배분
 -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분배

V. 업무집행조합원 개요

1. 개요

- 가. 회사명 : 주식회사 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 나. 대표이사 : 한석우
- 다. 설립일자 : 2012년 12월 13일
- 라. 납입자본금 : 금오십사억원정(₩5,400,000,000-)
- 마.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22, 508호(삼성동)

2. 연혁

- 2012.12. 법인설립(자본금 : 50억원)
- 2012.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등록번호 : 제2012-246호)
- 2013.01. 엠벤처제 1호공연예술전문투자조합 및 엠벤처문화활성화투자조합
출자지분 양수도계약 체결
- 2013.01. 에스엠씨아이제1호공연예술전문투자조합(구, 엠벤처제1호공연예술전문
투자조합) 및 에스엠씨아이문화활성화투자조합(구, 엠벤처문화활성화
투자조합) 대표펀드매니저 선임 및 조합명칭 등 변경 완료
- 2013.07 대표이사 변경(대표이사 김상수)
- 2013.09 유상증자(변경 후 자본금 : 54억원)
- 2013.11 투자조합 결성 : 에스엠씨아이문화조합4호(결성총액 155억원)
- 2013.12 투자조합 인수 : 지온-SMCI콘텐츠펀드(공동GP/지온인베스트먼트)
- 2014.03 공동대표이사 변경(공동대표이사 김상수, 한석우)
- 2014.10 투자조합 결성 : 에스엠씨아이5호한국영화펀드(결성총액 135억원)
- 2014.12 투자조합 결성 : 에스엠씨아이6호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결성총액 218억원)
- 2015.09 투자조합 결성 : 에스엠씨아이7호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결성총액 253억원)
- 2017.04 법인상호 및 대주주 변경
((주)에스엠콘텐츠인베스트먼트 → (주)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변경(대표이사 한석우)
- 2017.08 투자조합 인수 : 효성신성장산업펀드
- 2017.12 투자조합 결성 : 레오9호 효성청년창업펀드(결성총액 155억원)

3. 사업내용(정관상 사업목적)

-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 창업과 관련되는 상담, 정보제공 및 창업자에 대한 사업의 알선
- 창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또는 사업의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사업
- 해외기술의 알선, 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 투자한 창업자에 대한 자금의 알선
- 창업자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용역사업
-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
- 기업구조조정 관련 일체의 업무
- 금융자문 등 종합 컨설팅 서비스업
- 기업의 인수, 합병에 관한 컨설팅 및 투자

4. 주주현황(2017년 12월 현재)

(단위:주,%,원)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금액
(주)파티게임즈	509,424	47.17	2,547,120,000
한석우	270,216	25.02	1,351,080,000
레오인베스트(주)	110,376	10.22	551,880,000
S.M. Entertainment Japan Inc.	107,784	9.98	538,920,000
양정환	82,200	7.61	411,000,000
합 계	1,080,000	100.00	5,400,000,000

※ 1주의 가액 : 금오천원(₩5,000-)

5. 경영성과(2017년 12월말(가결산) 기준)

(단위:백만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잉여금	투자잔액	당기순이익
6,652	272	6,380	1,025	3,363	(18)

VI. 조합규약(안) : 별첨

VII. 대표펀드매니저 개요

1. 성명 : 신문철
2. 생년월일 : 1975.08.06.
3. 약력
 -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경력사항
한국영상투자개발(주)
쇼박스(주) 마케팅팀
아스텍창업투자(주) 전문심사역
우리들창업투자(주) 투자팀장
지온인베스트먼트(주) 투자팀장/기획관리팀장
(現) (주)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이사
4. 투자경력
 - 공연 ‘멜로디 포레스트 캠프’ 프로젝트 투자
 - 공연 ‘뷰티풀 민트라이프’ 프로젝트 투자
 - 공연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프로젝트 투자
 - 드라마 ‘질투의 화신’ 프로젝트 투자
 - 공연 ‘휘성/에일리 연말공연’ 프로젝트 투자
 - 영화 ‘날보러와요’ 프로젝트 투자
 -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프로젝트 투자
 - 공연 ‘김동률 전국콘서트’ 프로젝트 투자
 - (주)피크포인트 / 지분(CB) 투자
 - 전시 ‘MUSE:그대 나의 뮤즈’ 프로젝트 투자 외 다수

레오 10 호 소액투자전문펀드 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투자자산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레오 10 호 소액투자전문펀드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 32 조(투자의사결정)에 의한 심의기구(이하 “투자심의위원회”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원칙)

투자심의위원회는 관련 법규 및 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투자심의위원회의 구성)

1.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4 인으로 구성한다.
레오 10 호 소액투자전문펀드의 핵심운용인력 3 인, 박재원(총 4 인)
2.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은 대표펀드매니저가 된다.
3. 조합의 출자자인 한국모태펀드는 의결권 없이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4 조(투자심의위원회의 소집)

1. 투자심의위원회는 대표펀드매니저가 소집하며, 투자심의위원회의 소집은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5 영업일 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심의위원회 소집 시 심의안건, 근거법령 및 조합 규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준법사항체크리스트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투자심의위원회의 결의)

1. 투자심의위원회는 투자심의위원 중 3분의 2 이상 참석 및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안건이 부결되었더라도 심사역은 지적된 사항을 보완 후 재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심의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투자심의위원회 종료 후 즉시 각 위원 및 특별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사후관리)

담당 심사역은 피투자업체의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파악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표펀드매니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조합 결성총회에서 승인된 시점부터 시행한다.